

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86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9. 6. 10.
발 의 자 : 이민근 의원 외 10인

□ 제안이유

- 아동학대 사례의 증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내에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-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함(안 제1조).
-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(안 제3조)
-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,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명시함(안 제4조).
-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명시함(안 제5조).
-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·운영해야 함을 명시함(안 제7조).
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아동학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상담, 보호, 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함(안 제8조).
-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, 아동보호를 위하여 아동상담소, 아동복지시설, 영·유아보육시설, 아동보호 관련기관, 의료기관 등 관계기간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(안 제13조).

- 시장은 매년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시행계획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시책,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함(안 제 14조).
-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(안 제15조)

제정조례안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아동복지법 제23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)
-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(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)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별첨1 : 아동학대 현황(안산권역)
- 별첨2 : 아동학대 현황(전국)
- 별첨3 :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

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.
2. “보호자”라 함은 친권자, 후견인, 아동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아동학대”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.
4. “아동보호전문기관”(이하 “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학대아동의 발견과 보호,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해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·감독을 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.

③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의무)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초·중등 교원
2. 의료인
3.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
4.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
5. 보육시설의 종사자
6. 유치원의 장, 교직원 및 종사자

7. 사설학원의 운영자 및 종사자
8. 구급대의 대원
9.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
10. 가정폭력·성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종사자
11.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

제5조(교육) ①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제4조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6조(홍보)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연 2회 이상 반상회보, 지역신문, 유선방송,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)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학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, 보호, 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시의회 의원
 2.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관련 기관(시설)의 대표
 3. 안산교육청 초(중)등 교육 관계자
 4. 경찰관계자
 5. 의료계 전문가(소아청소년과, 산부인과, 정신과 각 1명)
 6.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
2.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.

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, 회의록을 작성한다.

제13조(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)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,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상담소, 아동복지시설, 영·유아보육시설, 아동보호 관련기관,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4조 (시행계획의 수립) ①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시책
2.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
3.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

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,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5조(사업비의 지원) 시장은 아동 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

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7조(실비보상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1865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9. 7. 3.
제 안 자 : 경제사회위원장

1. 수 정 이 유

-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고,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함.

2. 주 요 골 자

-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·감독을 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, 시장은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 조치 및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(안 제3조).

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(책무) 제2항의 “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” 를 “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하여”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“3일 이상” 을 “시장은 3일 이상” 으로 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3조(책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·감독을 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.</p> <p>③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책무) 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등에 대하여</p> <p>.....</p> <p>③ 시장은 3일 이상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